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9. 5.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7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9.1.)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등포구의회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원칙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 규정  
(안 제1조~제4조)
- 의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 등
-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6조)
  -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의 겸직제한 등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2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안전처리 등
-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제35조)
  -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등
-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제40조)
  -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청장질문,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구청장 등의 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제47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등
-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부칙 안 제2조)
-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부칙 안 제3조)
-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묵)

-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의 일부 조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내실있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총 47개의 조문과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그 간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규정을 하나의 조례안의 틀에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의회 기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최근 타 지방의회에서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추세에 맞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용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4일

발 의 자 : 김용범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영등포구의회 운영원칙 및 의정활동원칙을 정하고, 개별 조례나 규칙에 산재되어 있던 의회 운영 관련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기능적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원칙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의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 등록, 의석배정, 선서, 의원의 청가 및 결석 등

다.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6조)

- 의장·부의장의 선거, 의장·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임시의장의 선거, 의장의 겸직제한 등

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24조)

- 연간 회의 총일수,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안건처리 등

마.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제35조)

-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등

- 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제40조)
  -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구정질문,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구청장 등의 발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사. 질서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제47조)
  - 경호, 회의의 질서유지,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 등
- 아. 다른 조례의 폐지 규정(부칙 안 제2조)
- 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부칙 안 제3조)
- 차. 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안 제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제72조, 제113조, 제127조, 제134조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마. 입법예고 : 생략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의원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를,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0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④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결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5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에 따른다.

## 제4장 회의 운영

제17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20조(정례회의 집회일)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하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21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22조(임시회의의 안전처리)**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23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제24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72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에 따른다.

##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5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위원회 9명 이하
2. 행정위원회 9명 이하
3. 사회건설위원회 9명 이하

**제2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등의 심사·처리와 기타 「지방자치법」 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2. 행정위원회

가.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기획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3. 사회건설위원회

가.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바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사목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 그 내용 중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한다.

**제27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그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31조(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수)**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하로 한다.

-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규칙 제58조에 따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관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소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

원회의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36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구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회의 규칙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 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 (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서면질문서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 질문 답변서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39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7장 질서와 경호 등

**제4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그날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3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또는 발언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4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45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방청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6조(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7조(의정활동상황의 공개)** ① 의장과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
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
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구정질문 현황
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 서면질문 답변서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서면질문의원	성 명		
	소속 위원회	위원회	
답변서 제출자	국·소장 ○○○ (인)	소관부서	
질문 요지 :			
답변내용 :			
※ 답변내용 및 자료가 많을 경우 별지 붙임			